



보도 일시	2022. 7. 20.(수) 11:00 7. 21.(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7. 20.(수) 09:00
담당 부서	농업생명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현 (044-201-2371)
		담당자	사무관 안영창 (044-201-2374)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여름휴가

- 반려동물 유실·유기 및 학대 방지, 휴가지 펫티켓 준수를 위한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7.23.~8.28.) 실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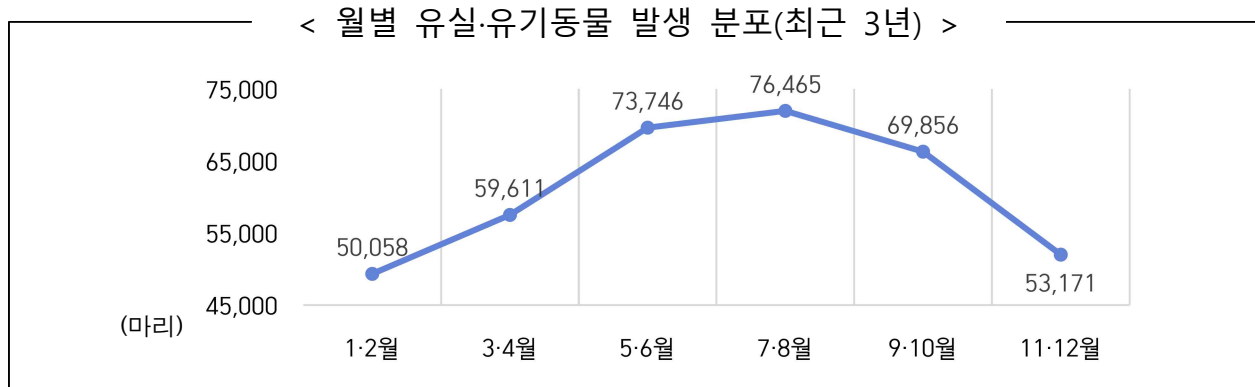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동물학대 예방 및 휴가지 펫티켓 준수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7.23.~8.28.) 실시
 - (캠페인) 여름휴가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펫호텔 이용 안내, 동물학대 금지, 목줄·인식표 착용 등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 (지도·단속)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조하여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약 4,700여 개 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 이용 안내, 휴가지에서 펫티켓 지키기와 동물학대 시 처벌강화 홍보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반려인 주거지역과 휴가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피서지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맹견 유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휴가 중 동물 위탁관리업 이용자를 위한 영업장 확인방법 안내

- 휴가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펫호텔 등 반려동물 위탁관리 영업시설 위치 정보 등 제공(전국 4,700여 개소)

③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펫티켓 준수

-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 ~ 8.31.) 운영
- *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신규, 변경신고)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 면제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변 수거봉투 지참, 공동주택 등의 내부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 이동 통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 * 맹견의 경우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참고로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누리집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위탁관리업’으로 조회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전국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등록현황(4,758개소, '22.6월 말 기준)
2. 펫티켓 지키기 포스터

붙임 1
전국 반려동물 위탁관리업 등록현황(4,758개소 '22.6월말 기준)

시·도	시·군·구	개소	시·도	시·군·구	개소	시·도	시·군·구	개소	시·도	시·군·구	개소
서울 (693)	강남구	94	광주 (128)	남동구	64	강원 (161)	평택시	83	경남 (274)	영덕군	1
	강동구	28		동구	4		포천시	13		영주시	6
	강북구	16		미추홀구	37		하남시	30		영천시	12
	강서구	57		부평구	38		화성시	132		예천군	2
	관악구	29		서구	71		강릉시	31		울진군	2
	광진구	22		연수구	39		고성군	2		의성군	1
	구로구	10		옹진군	2		동해시	11		청도군	2
	금천구	17		중구	23		삼척시	2		칠곡군	22
	노원구	29		광산구	41		속초시	25		포항시	1
	도봉구	17		남구	17		양구군	3		거제시	16
	동대문구	31	대전 (141)	동구	1		양양군	3	전북 (128)	고성군	1
	동작구	12		북구	34		영월군	2		김해시	60
	마포구	19		서구	35		원주시	33		남해군	1
	서대문구	18		대덕구	9		인제군	1		밀양시	9
	서초구	45		동구	20		춘천시	34		사천시	6
	성동구	27		서구	55		태백시	3		양산시	55
부산 (382)	성북구	20	울산 (132)	유성구	44	충북 (153)	평창군	3		의령군	1
	송파구	61		중구	13		홍천군	6		진주시	37
	양천구	31		남구	40		횡성군	2		창녕군	4
	영등포구	18		동구	13		보은군	1		창원시	70
	용산구	25		북구	19		영동군	3		통영시	10
	은평구	21	세종(26)	울주군	31		옥천군	2	전남 (114)	함안군	3
	종로구	7		중구	29		음성군	10		함양군	1
	중구	8		세종시	26		제천시	13		고창군	2
	중랑구	31		가평군	8		증평군	2		군산시	31
	강서구	22		고양시	131		진천군	8		김제시	1
	금정구	19		과천시	1	충남 (199)	청주시	94		남원시	4
	기장군	28		광명시	23		충주시	20		부안군	3
	남구	24		광주시	39		계룡시	2		완주군	2
	동구	4		구리시	24		공주시	9		익산시	25
	동래구	31		군포시	15		금산군	3		전주시	53
	부산진구	47		김포시	69		논산시	13		정읍시	7
	북구	23	경기 (1,388)	남양주시	74		당진시	11	제주 (84)	고흥군	1
	사상구	11		동두천시	14		보령시	5		광양시	17
	사하구	28		부천시	65		부여군	2		나주시	10
	서구	11		성남시	79		서산시	19		담양군	2
	수영구	27		수원시	145		서천군	3		목포시	16
	연제구	20		시흥시	58	경북 (212)	아산시	39		무안군	5
	영도구	11		안산시	68		예산군	3		보성군	1
	중구	11		안성시	16		천안시	87		순천시	25
	해운대구	65		안양시	37		청양군	1		여수시	23
대구 (233)	남구	15		양주시	34		태안군	2		영광군	1
	달서구	45		양평군	12		경산시	32		장성군	2
	달성군	27		여주시	13		경주시	25		장흥군	3
	동구	34		연천군	1		고령군	1		함평군	1
	북구	35		오산시	26		구미시	64		해남군	3
	서구	13		용인시	5		김천시	13		화순군	4
	수성구	55		의왕시	12		문경시	11		서귀포시	29
	중구	9		의정부시	60		상주시	7		제주시	55
인천 (310)	강화군	2		이천시	31		성주군	2	합계	4,758개소	
	계양구	30		파주시	70		안동시	8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 펫티켓!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

반려인이려면 준수해 주세요!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가슴줄(길이 2m 이내) 및
인식표 착용 필수!

※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

- 과태료 안내 -

목줄 미착용 시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인식표 미착용 시 :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

맹견은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주세요.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위반 시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맹견 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위반 시 과태료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



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뻔히 응시하지 말아 주세요.
공격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타인의 반려견을
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견주의 동의 없이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타인의 반려견에게
갑자기 다가가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

* 동물등록 관련 등록절차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에서 확인하세요.

* 맹견소유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는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확인하세요.